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366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15.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 보령시 C 대 532㎡, D 답 2,271㎡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령시 F] 사이에 2017. 8. 4. 맺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7. 9. 27. 접수 제21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수금 채권 성립 등

- 1) E은 G의 H 주식회사(2009. 8. 31. I 주식회사, 2021. 1. 13. J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그 변경 전후를 통틀어 'I'이라 한다)에 대한 2007. 3. 7. 자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I의 E과 G(이하 'E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은 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를 거쳐 2011. 7. 20.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양도되었고, 2011. 9. 8.경 그 채권양도 사실이 E 등에게 통지되었다.
- 3) M는 E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1467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3. 27. 'E 등은 M에 89,408,167원 및 그중 46,733,118원에 대하여 연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E에 대한 부분은 2012.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2) 4) 원고는 2020. 6. 16. E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M로부터 양수했고, 2021. 8. 13.경 그 채권양도 사실이 E 등에게 통지되었다.

나. E의 처분행위 등

- 1) E의 모 N은 1998. 12. 29. 이래 보령시 C 대 532㎡ 및 D 답 2,2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 2) N은 2017. 8.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O, 피고, P, E이 있다.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분할협의 중 피고와 E 사이의 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 3) E은 2017년경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보령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07년 성립되고 2012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E은 N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법정상속분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승계하게 되었는데(민법 제1005조 본문, 제1006조, 제1007조, 제1009조 제1항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의 사해의사와 위 각 1/4 지분을 E으로부터 이전받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다.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0년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이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양수금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를 떠나, M가 E를 상대로 하여 받은 지급명령이 2012.

4. 18. 확정됨에 따라 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었고(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건 소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 11. 16.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권보원

1) 원고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3호증 기재 등을 바탕으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파악한다.

2) G에게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1. 선고 2012가단33654 판결로 확정되었다.